

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의 산정방법 (제10조제1항 관련)

1. 지역별 가중치

- 가. I 지역(상수원보호구역): 5
- 나. II 지역(특별대책지역의 수변구역): 4
- 다. III 지역(특별대책지역 외의 수변구역 및 I 지역·II 지역·IV 지역 외의 특별대책지역): 3
- 라. IV 지역(특별대책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지역. 다만,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외한다): 2

2.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

해당 지역의 토지면적 및 가중치에 따른 배분액 =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의 $50/100 \times (\text{해당 지역의 면적} \times \text{해당 지역의 가중치}) \div \{(\text{I 지역의 면적} \times 5) + (\text{II 지역의 면적} \times 4) + (\text{III 지역의 면적} \times 3) + (\text{IV 지역의 면적} \times 2)\}$

비고: "해당 지역"이란 I 지역, II 지역, III 지역, IV 지역 중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.

3. 주민지원사업대상자 1명당 지원정도에 따른 배분액

- 가. I 지역: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.15를 곱한 금액
- 나. II 지역: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.13을 곱한 금액
- 다. III 지역: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.12를 곱한 금액
- 라. IV 지역: 일반지원사업비 총액에 0.10을 곱한 금액

4. 배분액 산정방법

일반지원사업비의 지역별 배분액은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산정된 해당 지역별 배분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.